

군포도시공사 제3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군포도시공사 임원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한 대 희



2023년 4월 6일

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12 호

## 군포도시공사 임원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

군포도시공사 임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임명자격기준)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장은 공무원 5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공무원 4급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 직급과 동일직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시설공단 또는 공사에서 3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그 밖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 영 지 원 부
입 안	직 위 성 명	경 영 지 원 부 장 과 성 우
	직 위 성 명	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
자	담당자 성명 (전 화)	문 원 미 ( 3 9 0 - 7 6 4 1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임명자격기준) 임원의 임명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p> <p>1. 사장은 <u>공무원 4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u></p> <p>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 직급과 동일직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p> <p>3. <u>시설공사 또는 공사에서 3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u></p> <p>4.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p> <p>5. <u>기타 임명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u></p>	<p>제5조(임명자격기준) 임원의 임명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p> <p>1. <del>-----</del><u>공무원 5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공무원 4급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u></p> <p>2. <del>-----</del> <del>-----</del> <del>-----</del><u>사람</u></p> <p>3. <u>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시설공단 또는 공사에서 3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u></p> <p>4. <del>-----</del> <del>-----</del><u>사람</u></p> <p>5. <u>그 밖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u></p>